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988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II . 부처의견	3
IV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달회의의원 등 11인
2. 제안일자 : 2025년 11월 6일
3. 회부일자 : 2025년 11월 7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치 소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인 용어 사용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부처의견

외교부는 동 개정안이 기존 보상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운영과 동일한 내용을 문언상 명확히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차원인바, 이러한 취지에 대한 찬성한다는 의견임.

다만, 추후 상기 법률들의 의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정합성 확보 위한 재조정이 필요한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Ⅳ. 검토의견

동 법률은 2016년 1월 1일 국제협력요원¹⁾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26일 제정되었음.

현행법은 순직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받을 수 있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요원"이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아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변경하려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당 법률을 인용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보상) 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순직군경</u> 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재해사망군경</u> 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6조(보상) ① ----- ----- ----- ----- ----- <u>순직군경소방</u> ----- ----- ----- <u>재해사망군경소방</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에 포함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고,²⁾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에 포함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지원하고 있음.³⁾

그런데 “군경”은 군인과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별개의 법률(「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에서 규율하고 있음에도, 보훈 관계법령이 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⁴⁾.

동 개정안이 전제로 하는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981호) 과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984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각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⁵⁾

2)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보훈보상자법」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9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953호) 검토보고(정무위원회, 2024.9)

<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 용어를 개정하는 법률안(이달희의원) >

개정안	개정 내용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1)	◦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개정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4)	◦ "재해사망군경" ⁶⁾ 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개정

동 법률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 정의한 용어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에서 용어를 변경하는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그에 맞추어 현행법도 조정되어야 할 것임.

다만 용어를 단순히 변경하는 개정은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처리하는 방식이 위원회의 심사 효율성 제고 및 법체계 정합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바,⁷⁾ 동 개정안과 같이 인용하는 정의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부칙을 개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87),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90), 「공무원 재해보

5) [참고자료] 국가보훈법령 관련 이달희 의원 발의안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7)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관련 법률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다는 점과 법률 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이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법제기준과 실제, 2024년 개정증보판, p.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85)이 발의
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참고자료] 국가보훈법령 관련 이달의 의원 발의안(‘25. 11. 6. 발의, 2건)

□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의안번호 13981호)**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4. (생략) 5. <u>순직군경(殉職軍警)</u>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순직군경소방(殉職軍警消防)</u> -- ----- ----- ----- ----- -----

* 이하 개정내용은 생략

□ **보훈보상자법 개정안 (의안번호 1398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u>재해사망군경</u>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 ----- ----- -----. 1. <u>재해사망군경소방</u> ----- ----- ----- ----- ----- -----

* 이하 개정내용은 생략

문 의 처
02) 6788-5264